

# 예비신자 혼인관련 질문지 해설

(사목자용)

## I. 질문지의 활용

### 1. 【목적】

본 질문지는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이 혼인과 관련된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있다면 이에 필요한 교회법적·사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2. 【시기】

본 질문지는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된 후 1개월 정도 지난 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공지】

사목자는 질문지를 작성하기 1~2주 전에 봉사자들을 통하여 모든 예비신자들에게 혼인 유무에 관계없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공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 일부를 생략한 채 증명하는 ‘일부’가 아닌 반드시 전체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여야 하고,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4. 【질문지와 봉투 준비】

사목자는 봉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지, 펜, 질문지를 모아 담은 봉투, 밀봉용 테이프나 풀 등을 준비하게 합니다.

### 5. 【질문지 작성과 제출 취지 설명】

본 질문지를 작성할 때 사목자가 직접 예비신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해주고 작성합니다. 또한 예비신자들이 혼인과 관계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올 때 봉사자가 아닌 사목자가 직접 상담해 주십시오.

본 질문지의 작성 전에 사목자는 예비신자들에게 질문지의 필요성과 취지, 활용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천주교회는 혼인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고,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혼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데 장애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세례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법적·사목적 도움을 드리고자 본 질문지를 제출받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에, 필요한 경우 면담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본 질문지를 작성해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질문지는 혼인 관련 장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바로 폐기될 것입니다.”

## 6. 【질문지 내용】

- 혼인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예비신자가 직접 본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 ‘본인의 혼인상태’는 예비신자 본인의 혼인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합니다.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에 체크합니다.
- 미혼 또는 사별인 경우 【1】문항 체크 후에 【5】문항으로 넘어갑니다.

## 7. 【봉투 밀봉 후 제출】

본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예비신자들은 질문지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동봉하여 봉투에 담고 밀봉하여 봉사자에게 제출하고 봉사자는 사목자에게 전달합니다.

## 8. 【면담과 조치, 질문지 폐기】

사목자는 질문지와 혼인관계증명서(필요하다면 당사자와 전·현 배우자의 세례, 혼인일자 등)를 확인하여 혼인 관련 장애 여부를 판별합니다. 장애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에 사목자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당사자와 면담을 하고, 필요한 교회법적·사목적 조치를 취합니다. 혼인 장애에 대한 확인이나 예비신자 면담, 교회법적 또는 사목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작성된 질문지를 폐기합니다.

## 9. 【개인정보보호】

본 질문지의 내용은 핵심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작성해야 하는 예비신자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목자는 본인은 물론 교리교사나 봉사자들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10. 【교리교육 봉사자 교육】

사목자는 다음과 같이 봉사자들을 교육해 주십시오. 혼인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봉사자에게 문의가 들어올 경우 사목자가 직접 상담합니다. 봉사자가 예비신자 교리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활용해서는 안 되며,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교리교육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봉사자가 지체없이 본당 사목자에게 알리도록 교육해 주십시오.

## II. 사목적·교회법적 조치 (요약)

### 1. 미혼(또는 사별)인 경우

1. 예비 배우자에게 이혼 경험이 없을 경우  
→ 세례성사를 받는 데 장애 없음
2. 예비 배우자에게 이혼 경험이 있을 경우  
→ 면담을 통한 예비 배우자와 그 전 배우자의 세례 유무와 세례시기, 혼인 장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전 혼인의 유대 해소를 위한 예비 배우자의 바오로특전을 위한 세례나 혼인무효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2. 현 배우자와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한 경우

어떠한 경우든 현 배우자와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했다면, 현 배우자가 이혼 경험이 없거나 전 혼인의 유대가 해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세례에 장애 없음 (바오로특전혼이나 혼인무효 판결에 의한 전 혼인의 유대 해소 확인 권고)

### 3. 현 배우자와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하지 않은 경우

1. 이혼 경험이 없는 현 배우자와의 혼인일 경우  
→ 당사자의 유아세례 여부와 배우자의 세례시기를 따져 혼인의 교회법적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
2. 이혼 경험이 있는 현 배우자와의 혼인일 경우  
→ 현 배우자의 전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함

#### 4. 전 혼인의 유대 해소

당사자이든 현 배우자이든 전 혼인의 유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① 전 혼인의 혼인예식을 성당에서 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 ② 신자로서 전 혼인의 혼인예식을 성당에서 하지 않았다면(교회법적 형식 결여) 약식소송을 통해서
- ③ 비신자로서 전 혼인을 사회혼만으로 했다면 세례를 통한 바오로특전을 통해서
- ④ 특별히 전 배우자의 사망, 바오로특전을 통한 세례, 혼인무효소송 등으로 이미 해소되어 있을 수도 있음
- ⑤ 형식상으로 세례식과 함께 하는 혼인예식 거행(단순유효화)이나 근본유효화 통해서